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에 따른 전자신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영 제33조제2항”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로, “매매된 것”이란”을 “거래된 경우”란”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을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현재”를 “현재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중”으로, “출연재산에”를 “재산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출연받은”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1부터 부표8까지 외의 부분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부표1부터 부표6까지 외의 부분 뒤쪽, 같은 서식 부표1 뒤쪽, 같은 서식 부표3,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부표4 앞쪽 및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
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0. 00.>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자우편 주소	
	④ 주 소				⑤ 피상속인과의 관 계	피상속인의 ()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원신고	
피상속인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거 주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⑩ 주 소					
	⑪ 상속원인 [] 사망 [] 실종 [] 인정사망 [] 기타				⑫ 상속개시일	
세 무 대 리 인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리 번 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⑰ 상속세과세가액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⑱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⑲ 감정평가수수료			⑮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⑳ 과세표준 (⑰ - ⑱ - ⑲)		㉞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 + ㉵ - ㉶ - ㉷ + ㉞)	
㉴ 세율		㉟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 산출세액		㊱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㊲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 (㉵ + ㉶)		㊳ 납부할 세액(합계액) (㉞ - ㉟ + ㊱ + ㊲)	
㉸ 이자상당액		납부방법	납부·신청 일자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연부연납	
세 액 공 제	㉺ 계 (㉸ + ㉹ + ㉺ + ㉻ + ㉼)	㉽ 현금	㉾ 분납
	㉻ 증여세액공제	㉿ 신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㊱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㊲ 그 밖의 공제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㉔ 주민등록번호" 및 "㉕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㉖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㉗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㉘ 성명"부터 "㉙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 "㉚ 증여재산가액"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의 "㉕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㉔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㉚ 증여재산가액"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㉔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㉚ 증여재산가액"
- "㉛ 배우자"란부터 "㉜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

가.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 (2025. 3. 14. 전 증여분까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㉝ 혼인"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㉞"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㉞ 출산"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㉟"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㉟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 3천만원을 적습니다.
- "㊱ 세율", "㊲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4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20억원 이하	10%	-
	120억원 초과 290억원** 이하	20%	120,000만원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95억원
 -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9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90억원
- "㊳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㊴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㊵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㊶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 "㊷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㊸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㊹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㉑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거주자)	증여재산가산(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장래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A26	B14	B21	B22	B23
- "㉒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의 순수토지]	개발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 "㉓ 재산종류코드"가 서화·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5의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㉔ 소재지·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청로 8-14))를 적습니다.
 -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㉞○○건설)을 적습니다.
- "㉕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㉒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 "㉖ 평가가액"란: "㉑ 재산구분코드"가 증여재산가산(A24, A25, A26)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재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㉗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해당 재산의 감소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해당 재산의 수증보상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해당 재산의 결여배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한도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저당권 등 광범위한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부터 제63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1. 혼인 증여재산						
① 혼인신고(예정)일						④ 합계
② 증여일자						
③ 증여재산가액						
2. 출산 증여재산						
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⑧ 합계
⑥ 증여일자						
⑦ 증여재산가액						
3.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명세						
구분		혼인		출산		
기준에 공제받은 금액	공제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그 금액	⑨		⑩		
	공제받은 때부터 10년이 초과한 경우 그 금액	⑪		⑫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1억원 - (⑨ + ⑩ + ⑪ + ⑫)]		⑬				
공제받을 금액		⑭		⑮		
증여재산공제액		⑯		⑰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1. "⑨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한다. 2. "⑦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한다. 3. "공제받을 금액(㉑ 또는 ㉒)"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㉓)"을 한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4. "증여재산공제액(㉔ 또는 ㉕)"은 "공제받은 때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그 금액(⑨ 또는 ㉑)" 중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금액과 "공제받을 금액(㉑ 또는 ㉒)"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 합계를 적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적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사용의무기한: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사용하고, 매각대금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않고,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현금 10억 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해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㉔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해야 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⑤매각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⑨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⑧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⑥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해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앞쪽)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 ---- 거래된 경우”란 ----- ----- ----- ----- ----- 거래 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 우는 제외한다)를 ----- -----.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현재 법 제4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중 ----- ----- 재산에 -----.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